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5479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31. 원고에게 한 건물 부분 취득세 61,994,130원, 지방교육세 3,542,530원 합계 65,536,660원과 토지 부분 취득세 36,870,7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물류단지(이하 '이 사건 물류단지'라 한다)' 내 'C센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 D(변경 후 E) 등 임야 50,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연면적 8,59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5. 1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실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6.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50%가 감면되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신고하고, 감면된 취득세 등 합계 221,076,62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8. 농업회사법인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일부(15,034㎡)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시 공무원들은 2017. 8. 2.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F에 임대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5.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2에 따라 취득세 25%가 감면되는 'A회사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다시 신고하고, 이 사건 토지(지목변경) 취득세를 36,870,720원, 이 사건 건물 취득세를 61,994,130원, 이 사건 건물 지방교육세를 3,542,530원으로 수정신고하는 한편 2017. 8. 28.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을 납부하였다(이하 추가로 납부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취득세 등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는 처음에 신고·납부한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50%를 감면받는 것이 정당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2. 3. 3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받으려면 부동산을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해야 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는데(제178조 제1항 제1호), 원고는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아니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바. 원고는 2022. 5.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 13, 14, 16, 17호증, 을 제1, 4, 7,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G단체(이하 'G단체'라 한다)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F을 자회사로 두게 되었다. 원고가 F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행위는 법령상 강제된 의무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거기에서 직접 물류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곡물제조시설로서 물류사업에 사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도 들었고 원고는 그에 대해서도 다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물류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가 옳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5, 18, 19, 21, 29, 30호증, 갑 제25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단체는 1961. 8. 15.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교육·지원사업, 농업경제사업, 축산경제사업, 상호금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2) 국회는 2011. 3. 31. G단체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 제10522호로 농협법을 개정하였다(이하 '개정 농협법'이라 한다). 개정 농협법은 G단체의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등을 분리하여 A회사(원고)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제134조의2 제1항), 부칙에서 ① 원고의 원활한 신설을 위하여 공포(2011. 3. 31.) 후 지체 없이 원고의 설립 등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하고(제2조 제1항), ② G단체로 하여금 '자회사의 설립계획 및 원고로의 편입 방안'을 포함한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며(제5조 제1항), ③ 법령 등의 미비로 원고의 사업 분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모든 사업을 즉시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농협법 시행일(2012. 3. 2.)부터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원고에 이관하고,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한다는 내용(제6조 제1항, 제2항)을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농협법 부칙은 2014. 12. 31. 개정되어, G단체는 이관을 하기 전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G단체로부터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제6조 제3항)과 G단체가 제3항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제6조 제4항)을 신설하였다.

3) G단체는 개정 농협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법 시행일인 2012. 3. 2. 원고를 설립하였다. G단체는 개정 농협법이 공포된 2011년부터 양곡 판매·유통과 관련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원고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왔고, 이에 따라 2015. 3. 2. 물적분할로 F을 설립한 뒤 2015. 5. 29. 원고와의 주식교환·이전을 통해 원고에게 F의 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물류사업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개정 농협법에 따라 G단체에 부과된 의무는 법령상 기한(~ 2015. 3. 2.) 내에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등을 분리하여 '원고'에게 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G단체는 양곡 판매·유통과 관련하여 이관 형태로 ① G단체가 현물출자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유상증자 방식으로 원고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안, ② G단체가 현물출자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환 방식으로 원고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안, ③ G단체가 현물출자하여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 자산을 이관하고, 원고에서 양곡 부분을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다가, 최종적으로 ②안을 선택하여 F을 설립한 후 원고 소속의 자회사로 전환하였다.

2) F은 2015. 3. 2. 설립되어 같은 해 5. 29. 원고의 자회사가 되었으므로, 이로써 개정 농협법의 취지에 따른 양곡 판매·유통사업 이관은 완료되었다. G단체는 그 무렵 F에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는데도, 2017. 1.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전하고 같은 해 3월경 이 사건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여(2017. 12. 15. 변경고시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게 했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 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임차해 'C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는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나 인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F에 시행자 지위를 이전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 건축을 원고가 마무리하여 F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들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법률이나 제도적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했다면 추징(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없이 세액 감면의 혜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곧바로 F에게 임대했다는 것은, 이러한 행동이 원고와 자회사인 F의 경영판단에 따른 역할 분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물류사업을 할 주체는 F이지 원고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2017. 12. 31.까지 원고나 그 자회사가 구매·판매 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5% 감면하는 규정이 있었고(제14조의2), 이 규정이 개정 농협법의 취지에 따라 설립된 원고와 그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조처임이 분명하다. 원고가 자기를 위하여 마련된 이 규정에 따른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해석의 한계를 넘어 적용을 확대할 공익상 필요성이 분명치 않다.

[원고가 드는 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230 판결은 G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가 2년 내에 개정 농협법에 따라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현물출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관한 것에 대해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것이었고, ②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2670 판결은 원고가 개정 농협법에 정한 기한 내에 이관을 완료하기 위해 일단 G단체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후 G단체가 자회사인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이를 원고에게 편입하는 방법으로 이관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용·수익권자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자회사 설립으로 사업 이관이 완료된 후 2년여가 지난 후에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기에서 직접 물류사업을 하지 않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참조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판사 김○○

판사 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별지)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A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A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 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의4. "물류단지시설"이란 일반물류단지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말한다.

7. "일반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7호·제15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작업장

바.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약사법」제44조제2항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8.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제7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제조 시설

■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2. 19. 대통령령 제31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공·조립시설의 규모 등)

③ 법 제2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제조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구 농업협동조합법(2016. 12. 27. 법률 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의2(A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A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 농업협동조합법 부칙<2011. 3. 31. 법률 제10522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8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A회사등의 설립 등에 관한 준비행위)

① 중앙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A회사등의 설립 등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및 출자 특례)

① 중앙회는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체자본조달계획 수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2. 중앙회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및 투자계획
3. 자회사 설립계획 및 A회사로의 편입 방안
4. 그 밖에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제사업의 이관 및 자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 특례)

①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A회사에 이관한다.

②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의 성과를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관을 하기 전에 그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 제1항·제2항·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신설 2014.12.31.>

④ 중앙회가 제3항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끝.